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박기열 의원
- 나. 의안번호 : 제2472호
- 다. 발의일자 : 2021. 05. 28.
- 라. 회부일자 : 2021. 06. 01.

2. 제안이유

- 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기초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나. 2020년 기준 전국 한부모가구는 154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8%를 차지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57%에 그치는 열악한 실정임.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10세
제공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함.
(제34조제1항제11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한부모가족지원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원안 참조)
- 다. 기 타 : 원안 참조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한부모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체가구 평균의 57% 수준으로 열악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구 중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에 근거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34조제1항제11호)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11.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제34조(감면)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u> 12. (현행과 같음)

■ 한부모가족 현황 및 비용추계

-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1호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는 것(법 제4조제2호)으로,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서울시는 2021년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로 장애 한부모 위기가구 생활밀착형 사례관리 및 한부모가족 상담소 실태조사²⁾, 주거·가사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³⁾,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대상 확대⁴⁾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⁵⁾에 있음.
- 본 개정안의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법에 근거한 복지급여 지원 대상으로 서울시 관내 한부모가족 총 31,158가구 중 5,893가구 ((표 2) 참조)가 이에 해당하는데,
 - 이는 법 상 복지급여 지원대상자⁶⁾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⁷⁾ 한 개 이상을 동시에 보장받는 가구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외하고 산출함에 따른 것임.

2) - 전담 사회복지사 1명 배치, 중등도 이상 위기가구 주3회 방문·양육코칭 등 지원
 - 한부모가족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담소(3개소) 실태조사('21년 상반기)

3) - 가사지원('20년 월2회 → '21년 월3회), 아이돌봄지원('20년 23개 시설→'21년 25개 시설)
 -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및 자립서비스 지원('20년 16가구 → '21년 22가구)

4)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21.5월~)
 - 만 25~34세 이하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월 5~10만원, '21.5월~)

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21. 2021년 주요업무 보고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7)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 7. (생략)
- ② ~ ④ (생략)

[표 2] 연도별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요약)

(단위 : 가구/가구원수)

연 도	총 계		1)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소 계		(A)재가보호		(B)시설보호			
2021.3.	31,158	72,047	5,893	19,717	5,812	19,636	81	81	25,265	52,330
2020	31,425	72,671	6,140	20,501	6,068	20,429	72	72	25,285	52,170
2019	32,407	75,457	8,135	26,778	8,053	26,696	82	82	24,272	48,679
2018	34,824	81,703	9,590	32,754	9,481	32,645	109	109	25,234	48,949
2017	36,178	85,225	10,177	36,238	10,058	36,119	119	119	26,001	48,987
2016	39,138	92,913	11,555	40,478	11,450	40,373	105	105	27,583	52,435

※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2021.3월말 기준)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붙임 1 참조)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2>의 가목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에 따라 30m³이하 가정용 요금 단가인 m³당 400원을 적용한 결과 연평균 2억 83백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법리적 검토

- 현재 서울시 하수도 사업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8)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9)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 중에 있음.

- 8)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9)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이에 「지방공기업법」 제14조¹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 목¹¹⁾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보전해주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져야함.
- 즉, 본 개정안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발생될 연평균 2억 83백만원의 하수도사용료 수익 감소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보전해 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임.
- 현행 조례 주관부서인 물순환안전국은 여타 감면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감면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을 지원한다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면서
 - 하수도사용료 수익 감소액에 대해 관련 사업부서(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보전해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동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10)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11) 「지방공기업법」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 다. (생략)

2. (생략)

- 다만,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감면시행에 따른 홍보 및 상수도사업 본부의 징수 전산시스템 변경작업 등에 공포 후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개정안 시행 시기를 2022년 1월 1일 사용량부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의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만,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의 정비 등에 필요한 절대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칙(안)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부칙)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부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